

인천지방법원 2023. 3. 10 선고 2022가단253464 판결 [보증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두

담당변호사 김서영

피고주식회사 B

변론 종결2023. 2. 10.

판결 선고2023. 3. 10.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류판매 및 수출입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의복 무역업 및 중개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20. 8.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탁판매계약]

갑(피고)과 을(원고)은 갑이 보유한 의류 및 재고상품을 을이 위탁판매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위탁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

- 1) 갑은 을이 상품을 판매하도록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을에게 상품을 위탁하며, 그 위탁물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고 을은 그 위탁물의 관리 및 판매를 대행한다.
- 3) 갑이 을의 지정 주소까지로 상품을 입고한 후 상품의 관리 및 판매, 물류에 관한 제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

- 1) 을은 갑이 위탁한 상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 1) 을은 상품의 내용 또는 제품상 하자가 있어 판매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그 밖의 이유로 갑의 반품 요구가 있는 경우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의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갑은 을에게 공급한 상품이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2개월간의 판매기간을 보장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2개월 이후에도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반환 요청이 있을시 요청일로부터 10일 내 갑이 지정한 물류창고까지 안전하게 입고시켜야 한다.
- 3) 상품의 반환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며, 을은 상품을 갑이 지정한 물류창고까지 안전하게 입고시켜야 한다.

제7조

- 1) 갑은 상품에 대한 판매를 을에게 위탁하며, 을은 이를 수락한다.

2) 위탁조건

- 현금보증금 : 5,000만 원(계약서 작성 후 물건 입고 전 입금)
- 보증보험 :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상품이 공급가를 기준으로 1억 원을 초과할 때 을은 초과금액의 50%를 보장하는 보증보험을 발행한다.

3) 을은 언제든지 상품 대금의 일괄결제를 통해 전량 사입이 가능하다.

다. 원고는 2020. 8. 26. 이 사건 계약 제7조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2020년 9월경 피고의 위탁판매 물품인 의류(이하 '이 사건 의류'라 한다)가 중국에 수입되어 원고에게 인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의류를 장당 1,500원에 판매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가격은 원고가 오히려 손해를 입게 되는 가격이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요구하는 가격으로 이 사건 의류를 판매하는 대신 피고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도 동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이 사건 의류는 그 이후에도 잘 판매되지 않아 재고로 남게 되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장당 900원에 판매할 것을無理하게 요구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의류를 반품할 기회도 놓친 채 이 사건 의류를 장당 9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의류의 판매로 이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2020. 9.경부터 2021. 12.경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월 90만 원의 창고보관료를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과 원고가 이 사건 의류의 보관을 위해 지출한 창고보관료 1,400만 원[1,440만 원(=90만 원 × 16개월) 중 일부]의 합계 6,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보증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창고보관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3항은 "상품의 관리 및 판매, 물류에 관한 비용은 을(원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을(원고)은 갑(피고)이 위탁한 상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의류를 보관하고 관리하며 그에 대한 보관비용을 부담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연장시키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의류를 저가의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요청하여 원고로 하여금 반품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고, 이로써 원고가 16개월 동안 이 사건 의류를 보관하게 됨으로써 1,600만 원 상당의 창고보관료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반품 청구를 방해하거나 계약기간을 부당하게 연장시킴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창고보관료를 지출하게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강주혜